■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3. 6. 7.>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 ・국 ・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비 고

1. 시・도별 실・국・본부의 수는 위 표의 실・국・본부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최소 기준 보다 적은 수의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6.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국·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